

형법

1.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은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인 乙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찾아와 차량을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죽을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乙에게 라이터를 건네주어 乙이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이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살인예비죄에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 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②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 ③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몰수의 대상이다.
- ④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이심되어서는 안된다.

3. 다음 중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업무에는 사무(私務)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 ③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는데, 예비·음모는 세계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형법」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하는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나,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하는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③ 형법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④ 부모의 별거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만 5세인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은 채, 친모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5. 다음 중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나, 일단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 또한 필요로 한다.
6. 다음 중 체포·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단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에 해당한다.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④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7.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8. 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경우,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페이스북 등에 글을 써 게시한 경우, 게시된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된 의도가 공익적 요소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甲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甲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9.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쥐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의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쫓개기 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甲은 처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 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甲 자신의 부모인 丙·丁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서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아파트 안에 있던 乙의 동생 A가 문을 열지 않자 공동으로 결쇠를 손괴하여 아파트에 침입한 경우, 丙·丁뿐만 아니라 甲 또한 공동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④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1.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하고, 과형에서는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 ②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乙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甲을 乙의 변호사법 위반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甲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를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전업주부인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과 乙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12. 다음 중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업권자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 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乙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乙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乙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乙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는 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볼 것이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13.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하였으나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 ④ 뇌물죄의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 ②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甲이 乙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 乙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甲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인행위 개시시기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甲이 乙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로 술을 마신 후 乙의 집 앞까지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온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 ③ 甲이 乙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죄실행의 용기를 내기 위해 만취상태로 술을 마신 후 乙의 집 앞까지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아온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 ④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하에서의 원인설정행위가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일맥 상통한다.

16. 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급여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분양을 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17.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방조범의 방조행위가 반드시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범의 범죄실현에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④ 경험칙상 결과발생에 ‘상당한’ 조건만을 원인으로 보는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인 생활경험으로 제한하여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과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만 인정하여 실제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8. 다음 <보기>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계약으로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이익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재산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기망하여 현금을 甲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甲이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으로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당해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0. 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②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③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장 乙은 이에 따라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된 선박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1.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결과반가치는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②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 ③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④ 판례는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 이외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한다.

22. 다음 중 문서와 인장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 ②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 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허위의 내용이 기입된 수정합의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단장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수정합의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④ 주식회사 신주 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신주 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3. 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선장 甲을 보좌하던 선박의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乙·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4.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 ③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폭언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후,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③ 「형법」 규정이 강간치사상죄의 주체에 강간미수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샷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6. 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하여 甲은행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 이를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포함한다.

27. 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 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③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아동을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친딸(12세)인 피해자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가진 결과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정상적 관계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하여 왔다면 학대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8.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명단’을 업로드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게 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또한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③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는, 형법의 특별법 규정으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아사시켜 살해하기 위하여 乙을 감금하고 있던 중, 살인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 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구법이 적용된다.

②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더 중하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200만원의 관세포탈행위로 개정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률이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 전의 ‘금 100만원 이상’에서 ‘금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피고인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④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 (가)와 (나)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기수와 함께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범죄

(나)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위법상태가 모두 계속되는 범죄

— < 보 기 > —

㉠ (가)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군무이탈죄, 도주죄, 일반교통 방해죄 등이 있다.

㉡ (나)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있다.

㉢ (가)와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와 함께 즉시 진행된다.

㉣ (가)의 경우 기수에 이른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나)의 경우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가)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나,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범익침해 종료시까지 가능하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다음 <보기> 중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 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 ㉣ 甲은 살해의 의도로 乙을 둔기로 내려쳤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바다에 수장한 행위에 의하여 乙이 사망하게 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 ㉤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	㉣	㉤
①	O	X	O	O	O
②	O	X	O	X	O
③	X	O	X	O	X
④	X	O	X	X	X

32. 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가) 甲은 친구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매일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乙이 나타나자 乙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근처를 지나가던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하였다.
 - (나) 丙은 丁에게 귀곡산장 310호에 투숙하는 B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丙의 청부를 받아 들인 丁은 310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B가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을 312호로 이동 투숙하는 바람에, 그 이후 310호에 투숙하게 된 C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 ① (가)에서 甲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 ② (가)에서 甲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③ (나)에서 丁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④ (나)에서 丁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C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33.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 甲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甲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작성 권한 없는 乙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수정하였더라도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이뤄진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실은 승낙이 없음에도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사실은 승낙이 있음에도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문제가 된다.

34.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행위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정당방위는 다른 방어 방법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익형량의 원칙과 최소방위의 원칙은 어느 정도 적용된다.
- ④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5. 다음 <보기>의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여, 이 실재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없으면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책임을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본다.
- ㉢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책임을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법한 행위로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 ㉣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목적을 동일하게 보는 일원론을 취한다.
- ㉤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은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특별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다음 <보기>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 ㉢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 의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숙식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고,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준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
 - ㉤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만으로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①	O	O	X	X	X
②	O	O	O	O	X
③	X	X	O	X	O
④	X	X	X	O	O

37. 다음 <보기>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더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 ㉢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에 복무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행위는, 죄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8. 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 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포함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乙이 甲을 도둑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乙은 무죄가 된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의 존재 유무와 상관 없이 乙은 무죄가 된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거나 무죄가 된다.
- ④ 고의는 인정되지만 행위의 동기로서의 책임고의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고의책임 및 고의형벌이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거나 무죄가 된다.

39. 다음 <보기>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손괴죄	㉡ 장물죄
㉢ 사인위조죄	㉣ 뇌물죄
㉤ 협박죄	㉥ 범죄단체조직죄
㉦ 존속협박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일반물건방화죄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40.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 ④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